

「구미시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46조 문구 삭제('12.2.1) 및 상위법인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법령이 제정되어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정비하며, 조례 조항 중 상위법보다 기준이 과도하게 규제되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명 개정
- 상위법 수정(제1조)
- 자격기준 수정(제7조제4호)
- 위원회 구성 규정 수정(제14조제4항)
- 약칭 변경으로 인한 수정(제2조 ~ 제1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조례 조항 중 상위법보다 기준이 과도하게 규제되어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46조 문구 삭제 및 상위법인 「청소년 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법령이 제정되어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정비하며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됨.
- 다만, 집행기관은 이후 상황의 변경과 사업변경 및 상위 법령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 적기적시에 조례개정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.